

의안 번호	812	【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】
----------	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11. 2. 1(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1. 2. 1(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1. 2. 18(금)

2. 제안이유

2008년 3월 31일 제정한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부칙 제2항 중 『적용시한』 명시
『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준공 시까지』 ⇒ 『2017년 12월 31일까지』 로 명시

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

관 련 법 규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5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11. 22 ~ 2010. 12. 12(의견 없음)

7. 검토의견 : 없음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<u>울산광역시중구신청사건립기금</u> (<u>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</u>)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울산광역시중구신청사</u> <u>건립기금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6.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재원) <u>울산광역시중구신청사건립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6.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<u>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준공 시까지</u> 적용한다.</p>	<p>부칙</p> <p>①(시행일)----- -----.</p> <p>②(적용시한) -----<u>2017년 12월 31일</u> <u>까지</u>-----.</p>